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2021년 10월 01일
- 회부일자: 2021년 10월 06일

3. 제안이유

- 「장애인복지법」 제48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충청북도 장애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을 수립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4. 주요내용

- 위탁사무 :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운영
- 위 치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정상동 11-1 밀레니엄타운
-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5년간
- 수탁기관 : 도내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위탁방법 : 공개모집
- 사 업 비 : 250백만원(도비 100%) * 1차년도 물품구입비(100백만원) 포함
- 위탁사무
 - 회관 운영·관리(인력포함), 시설사용허가 및 대부료 징수
 - 입주단체 관리 및 시설관리 등
 - 피해장애인 질병치료와 건강관리 지원 등
 - 피해장애인 사회참여 활동, 직업재활 훈련, 자립지원 등

○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250,000천원(도비 100%) * 연도별 변동 가능

인건비 및 운영비(150,000천원)	물품구입비(100,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 : 57,120천원 - (운영관리) 28,560천원×1명 = 28,560천원 - (청사관리) 28,560천원×1명 = 28,560천원 □ 운영비 : 92,88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 = 1,700천원 - (수도광열비) = 30,000천원 - (소모품비) = 9,300천원 - (지급수수료) = 23,880천원 - (시설 부대비용) = 28,000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사무실 = 10,500천원 □ 로비/휴게실 = 7,048천원 □ 다목적실(3) = 39,816천원 □ 소회의실 = 7,343천원 □ 대회의실 = 35,293천원

5. 검토의견

가. 동의안 제출 개요

○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장애인회관(준공예정 ' 21. 12.) 신축에 따라, 도내 장애인의 복지와 장애인단체 지원 등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장애인회관의 민간 위탁 운영을 추진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제출되었음.

□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개요

- 위 치 : 청주밀레니엄타운(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91-18 일원)
- 건축기간 : 2019. 4. ~ 2021. 12.
- 규 모 : 부지 3,300㎡(1,000평), 건물연면적 2,991㎡(906평)
 - ※ 지하1층(137㎡), 지상1층(714㎡), 2~3층(744㎡), 지상4층(652㎡)
- 총사업비 : 98억원(부지매입비 24, 건축비 74) / 도비 100%
- 건축 수탁기관 : 충북개발공사
- 주요기능

- 충청북도 장애인 사무실, 회의실 등 편의시설 운영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의 거점 및 허브기능 수행
- 장애인복지 분야의 집약체로서의 기능 수행
- 장애인 단체 간 네트워크, 협력사업 등 교류협력체계 구축

구 분	면 적		입 주 시 설
	m ²	평	
합 계	2,991	906	
4층	652	197	소회의실, 대회의실
3층	744	225	다목적실, 장애인단체(5개소)
2층	744	225	다목적실, 장애인단체(5개소)
1층	714	217	다목적실, 장애인단체(5개소)
지 하	137	42	기계실, 설비실

나. 검토 의견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르면, 충청북도지사의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회관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 따른 주민복지를 위한 공공시설로,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 시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이 타당한 바,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본 동의안을 제출한 것임.
- 본 회관의 민간위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른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정하고, 제4조의2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함.
 - 본 회관 주요 사무의 특성 상 제4조제3호에 따른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에 포함된다고 판단되는 바,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서 적정하며,

- 또한, 충청북도 피해장애인 컴퓨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7쪽에 제시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의견을 확인한 결과, 서비스 공급의 효율성 측면에서 민간위탁방식의 운영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8.>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되는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

제4조의2(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12. 18.]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

-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향후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위탁 사무들이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